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13. 9. 11.

행정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출일자 : 2013년 8월 29일

나. 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 : 2013년 9월 5일 회부

라. 상정일자 : 제17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(2013. 9. 9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행정국장 오승환)

가. 제안이유

- 지방공무원 임용령(대통령령 제23093호, 2011.8.24) 개정에 따라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전환관련 경력경쟁시험 최종합격에 대한 후속조치로 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기능직 공무원 사무직렬 중 2013년에 일반직 전환 가능인원 18명을 기능직 정원에서 줄이고 대신 일반직 정원으로 18명을 상제 증원.
 - 일반직 제 : 1,065명 → 1,083명 (증 18명)
 - 기능직 제 : 210명 → 192명 (감 18명)
- 일반직 정원 증가에 따라 직급별 정원채정기준(비율) 조정
 - ① 직급별 정원채정기준 비율 조정(안 제3조제2항 별표 2)
 - 일반직

- 7급 비율 “32% 이내”를 “33% 이내”로 개정 (증 1%)
- 9급 비율 “ 7% 이상”을 “6% 이상”으로 개정 (감 1%)
- 기능직
 - 7급 비율 “38% 이내”를 “42% 이내”로 개정 (증 4%)
 - 8급 비율 “45% 이내”를 “48% 이내”로 개정 (증 3%)
 - 9급 비율 “11% 이상”를 “ 4% 이상”으로 개정 (감 7%)
- 별정직
 - 7급 비율 “45% 이내”를 “51% 이내”로 개정 (증 6%)
 - 8급~9급 비율 “21% 이상”를 “15% 이상”으로 개정 (감 6%)
- ② 제4조(직급별 정원) [별표 3] 에서 일반직제를 1,065명에서 1,083명으로, 6급이하를 996명에서 1,014명으로, 기능직제를 210명에서 192명으로 변경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김 기 영)

- 이 개정조례안은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개정에 따라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관련 경력경쟁시험의 최종합격인원에 대한 후속조치로 일반직 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조직 관리 및 인력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.
- 주요내용을 살펴보면
 -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 중 2013년에 일반직 전환 가능인원 18명을 기능직 정원에서 줄이고 일반직 정원으로 18명을 상계 증원
 - 일반직 정원 : 1,065명 → 1,083명 (증 18명)
 - 기능직 정원 : 210명 → 192명 (감 18명)
 - 안 제3조제2항 별표 2에서 일반직 정원 증가에 따라 직급별 정원책정기준비율 조정
 - ▷ 일반직 공무원
 - 7급 : 32% 이내 → 33% 이내 (증 1%)
 - 9급 : 7% 이상 → 6% 이상 (감 1%)
 - ▷ 기능직 공무원
 - 7급 : 38% 이내 → 42% 이내 (증 4%)

- 8급 : 45% 이내 → 48% 이내 (증 3%)
- 9급 : 11% 이상 → 4% 이상 (감 7%)

▷ 별정직 공무원

- 7급 : 45% 이내 → 51% 이내 (증 6%)
- 8급~9급 : 21% 이상 → 15% 이상 (감 6%)

- 안 제4조 별표 3에서 6급이하 일반직 정원이 996명에서 1,014명으로 18명 증원되어 일반직제가 1,065명에서 1,083명으로 변경되었으며 또한 기능직제가 18명 감소되어 210명에서 192명으로 변경되었음.

- 본 개정 조례안은 2013년 5월 11일자로 실시된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관련 경력경쟁시험의 최종합격인원 23명중 5명(8급)은 “2012년도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정원 조정분 중 미합격에 따른 결원인원” 으로 충원하고, 나머지 18명(7급)에 대하여 정원조정을 통해 일반직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것으로
- 검토결과 동일직급간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의 전환으로 정원조정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은 없으며, 지방공무원의 정보화 역량 향상 등에 따라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되어 우리구 조직 및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지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228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 : 2013. 8.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지방공무원 임용령(대통령령 제23093호, 2011.8.24) 개정에 따라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전환관련 경력경쟁 시험 최종합격에 대한 후속조치로 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기능직 공무원 사무직렬 중 2013년에 일반직 전환 가능인원 18명을 기능직 정원에서 줄이고 대신 일반직 정원으로 18명을 상계 증원.

- 일반직 계 : 1,065명 → 1,083명 (증 18명)
- 기능직 계 : 210명 → 192명 (감 18명)

나. 일반직 정원 증가에 따라 직급별 정원채정기준(비율) 조정

① 직급별 정원채정기준 비율 조정(안 제3조제2항 별표 2)

- 일반직
 - 7급 비율 “32% 이내”를 “33% 이내”로 개정 (증 1%)
 - 9급 비율 “ 7% 이상”을 “6% 이상”으로 개정 (감 1%)
- 기능직
 - 7급 비율 “38% 이내”를 “42% 이내”로 개정 (증 4%)
 - 8급 비율 “45% 이내”를 “48% 이내”로 개정 (증 3%)
 - 9급 비율 “11% 이상”을 “ 4% 이상”으로 개정 (감 7%)
- 별정직

- 7급 비율 “45% 이내”를 “51% 이내”로 개정 (증 6%)
 - 8급~9급 비율 “21% 이상”를 “15% 이상”으로 개정 (감 6%)
- ② 제4조(직급별 정원) [별표 3] 에서 일반직계를 1,065명에서 1,083명으로, 6급이하를 996명에서 1,014명으로, 기능직계를 210명에서 192명으로 변경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

- 1) 「지방자치법」 제112조
- 2)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30조
- 3) 「지방공무원법」 제4조, 제27조
- 4)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3조, 제17조, 같은 법 부칙(제23093호, '11. 8.22.)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합 의 :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

- (1) 입법예고(2013.8.22 ~ 8.26, 4일간) : 의견없음
- (2) 규제심사 : 대상사무 없음
- (3) 부패영향평가 : 평가실시(의견없음)
- (4) 성별영향평가 : 평가실시(의견없음)

붙임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및 제4조과 관련된 [별표 2], [별표 3]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2]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

- 일반직공무원

구 분	4급이상	5급	6급	7급	8급	9급
기준비율	1%이내	7%이내	23%이내	33%이내	30%이내	6%이상

비고 1.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, 지도직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
 2.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.

- 기능직

구 분	6급	7급	8급	9급
기준비율	6%이내	42%이내	48%이내	4%이상

비고 :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.

- 별정직

구 분	5급상당	6급상당	7급상당	8급상당	9급상당
기준비율	0%	34%이내	51%이내	15%이상	

비고 :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.

[별표 3]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

기관별 직급별	총계	본청	구의회 사무국	보건소	동
총계	1,288	1,288			
정무직	1	1			
일반직계	1,083	1,083			
3급	1	1	-	-	-
4급	7	5	1	1	-
5급	61	30	2	11	18
6급이하	1,014	1,014			
별정직계	12	12			
기능직계	192	192			

☐ 조례 제3조 [별표 2] 변경안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- 일반직공무원 <table><tr><td>구분</td><td>4급이상</td><td>5급</td><td>6급</td><td>7급</td><td>8급</td><td>9급</td></tr><tr><td>기준비율</td><td>1%이내</td><td>7%이내</td><td>23%이내</td><td>32%이내</td><td>30%이내</td><td>7%이상</td></tr></table> 비고 1.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, 지도직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.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. - 기능직 <table><tr><td>구분</td><td>6급</td><td>7급</td><td>8급</td><td>9급</td></tr><tr><td>기준비율</td><td>6%이내</td><td>38%이내</td><td>45%이내</td><td>11%이상</td></tr></table> 비고 :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. - 별정직 <table><tr><td>구분</td><td>5급상당</td><td>6급상당</td><td>7급상당</td><td>8급상당</td><td>9급상당</td></tr><tr><td>기준비율</td><td>0%</td><td>34%이내</td><td>45%이내</td><td colspan="2">21%이상</td></tr></table> 비고 :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.	구분	4급이상	5급	6급	7급	8급	9급	기준비율	1%이내	7%이내	23%이내	32%이내	30%이내	7%이상	구분	6급	7급	8급	9급	기준비율	6%이내	38%이내	45%이내	11%이상	구분	5급상당	6급상당	7급상당	8급상당	9급상당	기준비율	0%	34%이내	45%이내	21%이상		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- 일반직공무원 <table><tr><td>구분</td><td>4급이상</td><td>5급</td><td>6급</td><td>7급</td><td>8급</td><td>9급</td></tr><tr><td>기준비율</td><td>1%이내</td><td>7%이내</td><td>23%이내</td><td>33%이내</td><td>30%이내</td><td>6%이상</td></tr></table> 비고 1.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, 지도직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.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. - 기능직 <table><tr><td>구분</td><td>6급</td><td>7급</td><td>8급</td><td>9급</td></tr><tr><td>기준비율</td><td>6%이내</td><td>42%이내</td><td>48%이내</td><td>4%이상</td></tr></table> 비고 :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. - 별정직 <table><tr><td>구분</td><td>5급상당</td><td>6급상당</td><td>7급상당</td><td>8급상당</td><td>9급상당</td></tr><tr><td>기준비율</td><td>0%</td><td>34%이내</td><td>51%이내</td><td colspan="2">15%이상</td></tr></table> 비고 :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.	구분	4급이상	5급	6급	7급	8급	9급	기준비율	1%이내	7%이내	23%이내	33%이내	30%이내	6%이상	구분	6급	7급	8급	9급	기준비율	6%이내	42%이내	48%이내	4%이상	구분	5급상당	6급상당	7급상당	8급상당	9급상당	기준비율	0%	34%이내	51%이내	15%이상	
구분	4급이상	5급	6급	7급	8급	9급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기준비율	1%이내	7%이내	23%이내	32%이내	30%이내	7%이상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분	6급	7급	8급	9급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기준비율	6%이내	38%이내	45%이내	11%이상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분	5급상당	6급상당	7급상당	8급상당	9급상당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기준비율	0%	34%이내	45%이내	21%이상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분	4급이상	5급	6급	7급	8급	9급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기준비율	1%이내	7%이내	23%이내	33%이내	30%이내	6%이상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분	6급	7급	8급	9급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기준비율	6%이내	42%이내	48%이내	4%이상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분	5급상당	6급상당	7급상당	8급상당	9급상당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기준비율	0%	34%이내	51%이내	15%이상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☐ 조례 제4조 [별표 3] 변경안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					개 정 안					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						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					
기관별 직급별	총계	본청	구의회 사무국	보건소	동	기관별 직급별	총계	본청	구의회 사무국	보건소	동
총계	1,288	1,288				총계	1,288	1,288			
정무직	1	1				정무직	1	1			
일반직계	1,065	1,065				일반직계	1,083	1,083			
3급	1	1	-	-	-	3급	1	1	-	-	-
4급	7	5	1	1	-	4급	7	5	1	1	-
5급	61	30	2	11	18	5급	61	30	2	11	18
6급이하	996	996				6급이하	1,014	1,014			
별정직계	12	12				별정직계	12	12			
기능직계	210	210				기능직계	192	192			